

검 토 보 고 서

- 1.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
- 2.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서강동 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안

차재홍의원
외 10인
자치행정과

(2011. 10. 14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6호선 광흥창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 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6호선 광흥창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 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

2. 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의안번호 제 11-72 호로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.

3. 주 요 내 용

- 토지현황
 - 위 치 : 마포구 창전동 243 - 1
 - 면 적 : 132㎡ 중 33.85㎡
 - ※ 건설관리과부지 245-1, 243-2, 242번지 총 81㎡ 는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점용료 감면
-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에스컬레이터설치 현황
 - 대 상 :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
 - 설치기간
 - (2011.05~ 2011.11)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공사대상 최종 선정
 - (2011.11~ 2013.06)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
 - (2013.06~) 공사준공 및 장비가동

4. 관계법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1항(사용·수익허가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(사용료감면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4항3호(사용료감면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3호(지방공기업 적용범위)
- 「도로법」 제42조제1호(점용료 징수의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4조

5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4항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서강동주민센터 부지인 마포구 창전동 243번지 1호 132㎡ 면적 중 33.85㎡면적과 건설관리과 소관 부지인 마포구 창전동 245-1외 2필지 81㎡면적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요청하였으며,
- 서강동주민센터 부지인 33.85㎡면적에 대하여 에스컬레이터 시설로 설치하여도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고, 인근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편의시설 설치의 확장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며,
-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무상 사용여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